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농정착지원금 등 지급기간 연장〉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45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영농정착지원금 등 지급기간 연장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3.
3. 회 부 일 : 2024.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영농정착지원금 등 지급기간 연장(안 제8조제4항)

현행법은 국가 등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영농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들의 선정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專業)적 농어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들의 선정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현행	개정안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⑥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요건 및 절차, 지원 조건 및 내용,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 및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 ----- ----- ----- ----- -----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 ⑤·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자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연차별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재원부담 증가 및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의무영농 기간 확대(최장 3년 → 5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해양수산부 의견

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자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재원증가에 부담이 있으며, 의무 수산업 경영기간 확대 및 연차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3) 한국4-H본부(청년농업인 관련 단체)

기간 연장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기존에 3년간 지원받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청년농사업 중 더 시급한 사업(융자지원)에 재원투입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동 개정안을 발의한 이종배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21.4.9.)하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24.5.29.)되었음.

다. 검토의견

지난 30년간 농가 인구와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농가 인구는 231만 4,000명, 농가 수는 103만 5,000가구로,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각각 65.3%, 41.4% 감소한 것임.

[30년간 농가인구 및 농가 수 및 비중]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농가인구 (비중)	666만 1천명 (15.6%)	403만 1천명 (8.6%)	306만 3천명 (6.2%)	231만 4천명 (4.5%)
농가 수 (비중)	176만 7천가구 (20.1%)	138만 3천가구 (9.6%)	117만 7천가구 (6.7%)	103만 5천가구 (4.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농가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 분야의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농업경영주¹⁾ 평균 연령은 66.1세,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56.0%(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14.3%)인 반면,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규모는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4%에 불과한 실정임.

[30년간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

구분	1990년	2010년	2020년
농업경영주 평균연령	53.4세	62.3세	66.1세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농가(비중)	32만 3,000가구 (18.2%)	54만 6,000가구 (46.4%)	57만 9,000가구 (56.0%)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농가(비중)	25만 8,000가구 (14.6%)	3만 3,000가구 (2.8%)	1만 2,000가구 (1.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1)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40세 미만의 청년농의 경우 2010년 전체 농가 대비 2.8%에 해당했으나, 2020년 1.2%에 그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나이가 50세 미만이면서 영농 기간 또는 총 영농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인 후계농의 경우에도 2010년 전체 농가 대비 4.7%였으나 2020년 3.2%에 그치는 등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후계농 및 청년농 규모 추이]

(단위: 가구, %)

구분	2010		2015		2020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청년농 (40세 미만)	33,143	2.8	14,366	1.3	12,426	1.2
50세 미만	173,622	14.7	98,391	9.0	74,400	7.2
후계농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54,977	4.7	35,212	3.2	33,470	3.2
전체가구	1,177,318	100.0	1,088,518	100.0	1,035,193	100.0

※ 자료: 농림어업총조사(2010, 2015, 2020)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막고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농업인력 유입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 및 영농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실제 사업 수혜의 대상이 되는 청년농업인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²⁾인 청년창업농으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동 사업의 선정자는 지원금 지급 종료 이후 지원금 지급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의무를 지게 됨. 예컨대, 3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원금 지급 종료 이후 3년간 영농 종사 의무가 발생함.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영농 초기 소득불안 완화 위해 정착지원금 지급 및 농지·자금교육 등 연계 지원하여 농업분야 진출 촉진 및 농업 고령화 완화
- ☐ (지원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창업농
 - * 사업선정자는 지원금 지급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의무영농에 종사(3년 지급시, 지원금 종료 이후 3년 간 영농의무 발생), 의무영농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함
- ☐ (지원방식)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제출자료('25.1.10)

이에 따라 2024년 말 기준으로 9,927명의 청년창업농이 총 802억 9,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2)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중위소득 140%(가구원 4인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함.

[최근 5년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현황: 2020 ~ 2024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년차 (월 110만원*)	지급인원	1,489	2,812	3,099	4,240	5,280
	지급총액	8,934	24,567	26,534	37,962	43,081
2년차 (월 100만원)	지급인원	1,490	1,420	1,480	1,963	2,711
	지급총액	8,046	14,032	14,478	20,715	26,966
3년차 (월 90만원)	지급인원	1,494	1,419	1,537	1,620	1,936
	지급총액	7,171	6,323	7,156	9,607	10,247
합 계	지급인원	4,473	5,651	6,116	7,823	9,927
	지급총액	24,151	44,494	48,360	68,160	80,294

* 월 지급단가 변경

- (2022년까지)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2023년부터)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제출자료('25.1.10)

한편,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은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만 40세 미만의 청년 수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영어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290명이 총 34억 1,6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영어정착지원금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 **(지원내용)** 만 40세 미만 청년 수산업 경영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어촌정착 지원금 지급
- ☐ **(사업대상)**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 수산업 경영인
 - * 사업선정자는 지원금 지급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의무 어업경영에 종사(3년 지급시, 지원금 종료 이후 3년 간 어업경영 의무 발생), 의무 어업경영 기간 동안 전업적으로 어업에 종사해야함
- ☐ **(지원방식)**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자료: 해수부 수산정책관 어촌어항과 제출자료('25.2.10)

[최근 5년간 영어정착지원금 지원 현황: 2020 ~ 2024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년차 (월 110만원*)	지급인원	64	61	62	66	111
	지급총액	767	732	744	871	1,465
2년차 (월 100만원)	지급인원	79	85	89	74	90
	지급총액	853	918	961	861	1,048
3년차 (월 90만원)	지급인원	65	60	74	87	89
	지급총액	623	576	710	940	904
합 계	지급인원	208	206	225	227	290
	지급총액	2,243	2,226	2,416	2,672	3,416

* 월 지급단가 변경은 영농정착지원금과 같음

※ 자료: 해수부 수산정책관 어촌어항정책과 제출자료('25.1.10)

개정안은 청년농어업인 등에 대한 현행 3년의 정착지원금 지급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함으로써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라 지원기간을 사업 시행지침에서 규정한 3년보다 2~4년 연장하여 '5~7년'으로 법률에 명시할 경우 청년농어업인들의 정착 유인이 증가하여 농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 심사 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 심사 시에 당초 최장 3년이라는 지급기간은 영농정착지원금에 있어 청년창업농의 연차별 농업소득 및 의무 영농기간의 적정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가구 농가소득은 귀농 3년 차부터 귀농 전년도 소득의 90%를 상회하고, 5년 차는 귀농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귀농가구 농가소득 추이]

(귀농전년도) 3,491만원 → (1년차) 2,536(귀농전 소득의 73%) → (2년차) 3,055(88%) → (3년차) 3,216(92%) → (4년차) 3,385(97%) → (5년차) 3,563(102%)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25.1.10) 제출자료, 2023년 귀농귀촌실태조사서 p.46

이에 현행과 같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내에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 보장이 가능하므로 영농정착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지원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경우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 보장은 물론 농업경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동안 창업청년농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그런데 최소 지급기간을 5년으로 명시할 경우 이와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 종료 후 의무영농 종사기간 역시 최소 5년이 되므로, 이 점이 창업청년농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4,000억원 이상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영농영어정착지원금 지급기간을 최장 5년

으로 확대할 경우 2026년 565억 5,000만원, 2030년 925억 2,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176억 8,400만원(연평균 835억 3,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³⁾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 ~ 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영농정착 지원금	55,200	81,600	90,000	90,000	90,000	406,800	81,360
영어정착 지원금	1,350	1,974	2,520	2,520	2,520	10,884	2,177
합계	56,550	83,574	92,520	92,520	92,520	417,684	83,53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문 의 처

02)6788-5415

3) (국 비) 5년간 총 2,923억 7,900만원 (연평균 584억 7,600만원)
(지방비) 5년간 총 1,253억 500만원 (연평균 250억 6,100만원)